

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6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강남구청장(문화도시과) 제출

나. 상정의결
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(2022.10.16.)
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가. 제안이유

- 2023. 6. 30. 일자로 준공된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에 의거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동의내용 :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강남문화재단 위탁동의
-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▶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)
- ▶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▶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
- ▶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(사업의 대행)

- 추진필요성 : 문화·예술분야로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질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-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- 수탁기관 : 강남문화재단
- 선정방식 : 수의계약
- 소요예산 : 450,622천원
- 위탁내용
 - 청사의 시설물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 - 청사 유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등 물품관리
 - 청사 유지관리·운영에 따른 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
 - 제1호 내지 3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
 - 기타 ‘재단’ 과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
- 위탁시설 개요
 - 건물명 : 구립 논현문화마루
 - 소재지 :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(논현동 40-5)
 - 연면적 : 9,411.93㎡(2,847평) ※ 대지 1,363.㎡(412평)
 - 준공일 : 2023. 6. 30.(신축)

구분	층별	면적	시설 용도	비고
지상	5층	536.54㎡	도서관	문화도시과
	4층	536.54㎡	도서관	문화도시과
	3층	536.54㎡	평생학습센터	교육지원과
	2층	479.04㎡	강남문화원, 평생학습센터	문화도시과 / 교육지원과
	1층	818.48.㎡	강남문화원	문화도시과
지하	1층	1,005.36㎡	강남문화원/주차장	문화도시과
	2~6층	5,049.43㎡	주차장/기계실	교통행정과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117조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
 -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 -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동의안은 강남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설된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3년간 ('24년~'26년) 위탁하려는 것이며, 연간 위탁예산은 450,622천원으로 보임.
 - 도서관 프로그램 위탁운영이 아니라, 지하 6개 층, 지상 5개 층 건물인 논현 문화마루 청사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안임.
- 일반적으로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,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(지방자치법 제117조, 사무의 위임 등, 제2항 및 제3항).
 - 이 경우, (민간)위탁을 추진하려면, 사전에 위탁사무 선정의 사전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, (민간)위탁사무의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(민간)위탁 추진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그 후 예산안을 의결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, 이러한 사전절차가 끝난 후,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될 것임.
- 제출된 동의안만으로는 민간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강남구가 출자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청사관리 등의 사무위탁을 하여야 할 타당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최소한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결기관으로서의 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.
 - 다만, 수탁 대상기관인 강남문화재단이 동문화센터 및 역삼푸른도서관 등 청사관리를 수년간 이행해 오고 있어 공공성과 안정성,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,
 - 경제적 효율성 판단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, 강남문화재단이 수탁자가 되더라도 이를 민간기업에 채용역 줄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- 또한 청사 공간 이용 실태를 보면, 4층과 5층이 도서관으로 배치되어 있는데, 이 도서관 운영은 별도로 위탁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며, 별도 위탁할 경우, 위탁 비용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임.
- 따라서, 강남문화재단이 청사관리만 수탁하고, 도서관 운영은 별도로 시행할 것인지 여부가 해당 부서로부터 타당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. 끝.

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 27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문화도시과

1. 제안이유

2023. 6. 30. 일자로 준공된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에 의거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동의내용 :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강남문화재단 위탁동의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(사업의 대행)

○ 필요성

- 문화·예술분야로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질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다.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
라. 수탁기관 : 강남문화재단

마. 선정방식 : 수의계약

바. 소요예산 : 450,622천원

사. 위탁내용

- 1) 청사의 시설물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- 2) 청사 유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등 물품관리

- 3) 청사 유지관리·운영에 따른 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
- 4) 제1호 내지 3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
- 5) 기타 ‘재단’ 과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

아. 위탁시설 개요

- 건물명 : 구립 논현문화마루
- 소재지 :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(논현동 40-5)
- 연면적 : 9,411.93㎡(2,847평) ※ 대지 1,363.㎡(412평)
- 준공일 : 2023. 6. 30.(신축)

구분	층별	면적	시설 용도	비고
지상	5층	536.54㎡	도서관	문화도시과
	4층	536.54㎡	도서관	문화도시과
	3층	536.54㎡	평생학습센터	교육지원과
	2층	479.04㎡	강남문화원, 평생학습센터	문화도시과 / 교육지원과
	1층	818.48㎡	강남문화원	문화도시과
지하	1층	1,005.36㎡	강남문화원/주차장	문화도시과
	2~6층	5,049.43㎡	주차장/기계실	교통행정과

※ 지하 주차장 : 교통행정과 별도 관리 및 운영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

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 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.

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